

학교운영위원회를 바로 알자

아이들이 학교의 주인이 되게 하자

박승민

학교교육시민모임 간사

학교의 주인이라 하면 아이들(학생)을 쉽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요즘은 '대한 교육'이나 '열린 학교'라는 이야기도 많고, 아이들 중심의 새로운 교육에 대한 관심과 개혁의지로 획일화된 교육의 틀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아이들은 열악한 교육환경과 입시의 중압감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합니다. 1995년 30년만에 치른 4대 지방선거가 있을 후 본격적인 지방교육자치가 실시되어 '학교운영위원회'라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육의 주체인 학생·교사·학부모가 직접 참여하여 학교 현장의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 제도인데, 아직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넓히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ی겠다고 하는 노동조합운동에서는 사회 어느 집단이나 세력보다도 더 많은 관심을 교육문제에 쏟아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이 글은 노동조합 간부들과 활동가들에게 학교운영위원회를 간단하게 소개하기 위해 쓰여졌습니다. 사회개혁과 진보의 한 주체인 노동운동 활동가들이 민주주의의 밑바탕이 되는 교육 개혁에 더 많은 관심과 참여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원위원, 학부모위원 그리고 지역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위원 수는 학교의 규모에 따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의 비율을 본다면 학부모 위원 40~50%, 교원 위원 30~40%, 지역위원 10~30%로 구성됩니다.

△ 교원위원 : 교원 전체 회의의 직접 투표에 의하여 교사 중에서 선출, 학교장은 당연직 교원으로 포함.



학교운영위원회는 교목의 주체인 학생·교사·학부모가 직접 참여하여 학교 현장의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 제도이다.

△ 학부모위원 : 전체 학부모가 총회 또는 시신을 통해 직접 선출.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학년별,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대표자 회의에서 선출. (학부모위원을 육성회 임원을 선출처럼 지명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 지역위원 :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의 협의를 거쳐 선출.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의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정 → 선출관리위원회 구성 → 선거 공고, 입후보
→ 교원 위원, 학부모 위원 선출 → 지역 위원 선출 → 위원장 선출 → 구성 완료

위원과 위원장 선출이 끝나면 구성이 완료됩니다. 위원장 선출은 교원 위원과 학부모 위원이 선출된 후 선출된 양 위원들이 모여서 지역 위원을 선출한 다음 교원 위원과 학부모 위원, 그리고 지역 위원이 모여 선출합니다. 일부 학교에서 교원 위원과 학부모 위원만 모여서 선출하는 것은 위법이며, 위원장은 학부모 위원과 지역 위원 중에서 선출합니다. 물론 투표에는 모두 참여합니다. 이렇게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어떤 일을 할까요. 이번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다룰 수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어떠한 사안을 심의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관련법과

시·도별 조례에는 심의 대상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법과 조례에 따른 심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육 과정 운영 방법

△ 교과용 도서 및 부교재의 선정

△ 정규 학습 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 중 학생의 교육 활동

△ 학교 현장 및 규칙의 제·개정

△ 학생 지도에 관한 사항

△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수련회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 교육 프로그램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 학교의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 교장 및 교사 초빙 추천

△ 기타 학교 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 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 학부모·교원·학생·지역 주민으로부터 제출된 학교 운영 등과 관련한 건의 사항을 처리

△ 위원회의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기도 합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장이 제출한 안건을 심의하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원들 스스로 심의 안건을 제출할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개선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나 새로운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위원은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안건을 만들고, 동료위원과 협의하여 전체 위원의 1/4 이상, 또는 1/3분 이상의 의견이 모이면 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정식으로 건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학교 재정 지원을 목적으로 한 기존의 육성회와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의 입장에서 본다면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표가 학교 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기구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육성회 임원과 달리 학부모 모두에게 부과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학교에 따로 돈을 낼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돈보다는 오히려 학교 발전에 필요한 것을 창안하고 학부모들의 의견을 모아 내어 학교 운영에 반영시키는 학부모 대표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와는 별도로 학교에 여러 가지 지원할 사항을 논의하고, 또 학교를 통하여 학부모들이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협의하는 학부모들의 자율적

인 조직인 학부모회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별도의 규약이 필요하고 그 대표나 집행부의 선출도 학교운영위원회와는 별도로 진행됩니다.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의 차이를 예를 들어 본다면,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학교운영지원비 예산을 심의하고, 학교운영비의 징수 액수는 학부모회에서 결정합니다. 학교운영지원비는 학부모회에서 징수하는 것이며 그 액수 또한 학교의 학부모회에서 결정하는 것이죠.

실시 2년을 돌아 보며

내 아이의 교육에 대해, 조금 더 나가 교육 발전을 위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고자 했던 학부모들은 교장선생님들의 관료적인 모습에서 많이 좌절해야 했지만 소신을 갖고 노력한 결과 시간이 흐를수록 모범 사례가 늘어가고 학교운영위원회가 정착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겐 입시의 중압감에서 벗어나 활기찬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학교에 아이들을 볼모로 잡힌 학부모에겐 당당하게 교육의 주체로 나설 수 있는, 그리고 확실적인 교육에 침묵을 강요당해야 했던 교사들에겐 내일의 희망인 아이들에게 진리를 가르칠 수 있는 제도인 학교운영위원회. 이런 학교운영위원회의 보다 빠르고 올바른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학교운영의 주체인 학생·학부모·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하여 교육부의 올바른 홍보와 교육이 필요합니다. 찬조금 내기 관행에 젖어 있는 학부모들이 과거의 육성회와 어떻게 다른 지 잘 모르는 가운데 찬조금에 대한 부담으로 교육의 문제점을 인식하면서도 학부모 위원으로 나서기를 꺼려합니다.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올바른 교육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을 바르게 인식·정착시켜야 합니다.

'내 아이만은 그래도 무언가 다르게...' 라는 생각은 자식을 둔 부모라면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겁니다. 학교의 문제점을 느끼면서도 혹시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싶어서 선뜻 나서지 못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말 잘하고 앞장서기 좋아하는 누군가가 해결해 주기 바라는 안일한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내 아이가 다니는 학교니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교육현실이라는 생각으로 학교의 주인이 되고 교육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내일의 희망인 내 아이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